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5464
----------	------

발의연월일 : 2024. 11. 12.

발 의 자 : 김기현 · 유용원 · 서명옥
박대출 · 한기호 · 박덕흠
고동진 · 유상범 · 김대식
강대식 · 서천호 · 이달희
의원(12인)

주 문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이후 지속됐던 ‘남북한 핵의 진공상태’는 사실상 33년 만에 종결되고, 북한에 의한 ‘핵 독점 시대’가 현실화되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 NPT 가입 국가로서 핵의 비확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함은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핵의 포기를 요구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 3일 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도 북한은 미 대선을 전후해 제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리 정보당국의 국회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고 러시아도 북한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향후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침략전쟁에 러시아도 가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러·북 군사협력이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국제평화에도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 독점 상황에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위권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또다시 제7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자체 핵무장을 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핵무장으로서(자위권적 핵무장), ▲대한민국이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원해서 하는 핵무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이며(전략적 핵무장),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를 지향하는(평화적 핵무장)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임을 함께 천명하여야 한다.

제안이유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

도 북한은 미 대선을 전후해 제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리 정보당국의 국회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성공하는 등 끊임없는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이는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이후 지속됐던 ‘남북한 핵의 진공상태’가 실질적으로 종결되었고, 북핵으로 인해 군사력의 비대칭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실질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실효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앞으로 7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의 핵 무력도발을 계속 이어갈 경우, 한반도 안보의 위기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핵무장 선언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바 동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함.